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43
----------	------

발의연월일 : 2023. 8. 25.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신동운 의원,
신달호 의원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평가할 의무를 규정하고 공동주택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배출자가 유지·관리할 책무를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며 환경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의무 신설(안 제8조)
- 나. 공동주택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등에 대한 유지·관리 책무 신설(안 제12조제4항)
- 다.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개정사항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음식재료”를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 재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음식재료”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 재료”로,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를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

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주류 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8. “중량제기기”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8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제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생활폐기물”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5조 중 “관할 구역”을 “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업자 등의 책무)”를 “(사업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와”를 “사람과”로,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를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으로, “이 조례”를 “조례”로, “협력”을 “적극적으로 협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을 “적극적으로 협력”으로 한다.

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8조) 제1항 중 “권고하거나 지도”를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을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으로 한다.

제8조의2(중전의 제8조)제5항제1호 중 “집단급식소” 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로,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 : 깔끔 포장”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중전의 제3호) 중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으로,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사람” 으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사람 :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소량 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제8조(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수료라” 를 ““수수료” 라” 로, “종량제 시행” 을 ““종량제 시행” 이라 한다” 로, 같은 조 제5항 중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을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으로, “전용수거용기” 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 을 “사람에 대해서 법 제68조” 로 한다.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 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 1 과 같다.

제11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을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를 “전용수거용기”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을 “다량배출사업장”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을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로, “전용수거용기” 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수거용기” 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2항에 따른” 으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 을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사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운반차량 및” 을 “전용 운반 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 을 “제2항” 으로, “자의” 를 “사람의” 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을 “경우, 대행 계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 을 “제4항” 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을 각각 “다량배출사업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을 “해당하는 사람은 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호에 따라” 로, “제1호의 규정” 을 “제1호” 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를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또는” 으로, “자에” 를 “사람에”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5조에 따른” 으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 을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을 “다량배출사업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u></p> <p>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u></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u>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하는 자의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u></p>	<p>제1조(목적) -- 조례는 「<u>폐기물관리법</u>」에 따라 <u>음식 재료</u> ----- ----- ----- -----.</p> <p>제2조(정의) ----- -----.</p> <p>1. ----- 「<u>폐기물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u>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u> ----- <u>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u> -----.</p> <p>2. -----<u>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u> ----- ----- -----.</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u>법 제1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u></p>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
하는 다방과 주로 빵·떡·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가 운영하는 사업장, 음식물 제조
·가공·처리로 음식물류 폐기물
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 6. (생략)

7.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
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달성
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
다.

<신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
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
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

주류 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영업
을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4. ~ 6. (현행과 같음)

7.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이하 “군수”라-----
-----.

8. “종량제기기”란 「전자정보처
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
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
시」 제2조제8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생활폐기물---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

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군수의 책무) ----- 군 -----

-----.

제6조(사업자의 책무) -----

- 사람과 -----
-----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
----- 조례-----
----- 적극적으로 협력-----.

제7조(주민의 책무) 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
-----.

② -----

----- 적극적
으로 협력-----.

제8조(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14조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다.

⑤ (생략)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랩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

3에 따라 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

-----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

④ -----

-----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⑤ (현행과 같음)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사람 -----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 : 깔끔 포장 -----

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생 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1. (생 략)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 폐기물과 혼합배출을 하는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② (생 략)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

하고자 하는 사람은 -----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 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

④ -----

----- 사람
에 대해서 법 제68조-----
-----.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단,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
-----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

② -----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

③ ----- 제2항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

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사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

③ -----

----- 전용 운반 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

④ ----- 제2항 -----
----- 사람의 -----
----- 경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 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

우, 대행 계약

-----.

⑤ ---- 제4항

-----.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

-----.

② 다량배출사업장

-- 해당하는 사람은 법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 제1호

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1. (생략)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1. (현행과 같음)

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또는 -----

----- 사람에게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제15조에 따른 ----- 사람에게 대하여 법 제68조-----

② ----- 제1항에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량배출사업장-----

-----.

□ 「폐기물관리법」 (2022.4.26. 타법개정, 2023.4.2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22.11.29. 일부개정 · 시행)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3.8.11. 일부개정 · 시행)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2014.4.22. 제정·시행)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6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